신탁계약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뫼비우스 200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일

- 2011. 10. 21

3. 변경사유

- 분배금 지급방식 자구 수정(연금지급식 → 월지급식)
-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상향 조정(2등급 → 1등급)
-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변경
- 환매수수료조항 자구 수정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투자운용인력, 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투자신탁 재무정보·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의 요약 재무내용·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식 클래스(C 클래스)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2. 연금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연금지급식 투자자 3. 임의식 클래스(A1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 투자자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A-H 클래스) 수익증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5. A-E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펀드 계좌개설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6. C-D 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7. C-W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집합투자기구(신탁업자)·「법인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식 클래스(C 클래스)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2.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월지급식 투자자 3. 임의식 클래스(A1 클래스) 수익증권 : 임의식 투자자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A-H 클래스) 수익증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5. A-E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펀드 계좌개설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6. C-D 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7. C-W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집합투자기구(신탁업자)·「법인

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집합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집합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④(생략)	④(생략)
⑤특히 역모기지론의 개념에 입각한 연금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원금의 감소가 발생될 수도 있다.	⑤특히 역모기지론의 개념에 입각한 월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원금의 감소가 발생될 수도 있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적립식 클래스 수익증권(“C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2. 연금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3. 임의식 클래스 수익증권(“A1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 수익증권(“A-H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5. A-E 클래스 수익증권 6. C-D 클래스 수익증권 7. C-W 클래스 수익증권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적립식 클래스 수익증권(“C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2. 월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3. 임의식 클래스 수익증권(“A1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 수익증권(“A-H 클래스 수익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5. A-E 클래스 수익증권 6. C-D 클래스 수익증권 7. C-W 클래스 수익증권
②~⑤(생략)	②~⑤(생략)
제33조(분배금의 지급방법 등)	**제33조(분배금의 지급방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성과(이하 “분배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분배할 수 있다. 1. A1·A-H·A-E·C·C-D·C-W 클래스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노후생활·교육·결혼 등 장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재산증식을 도모하고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A2 클래스 수익증권은 적립식투자자의 적립된 목돈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제공, 이자생활자의 정기적인 연금지급효과 제공, 연금지급식 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성과(이하 “분배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분배할 수 있다. 1. A1·A-H·A-E·C·C-D·C-W 클래스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노후생활·교육·결혼 등 장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재산증식을 도모하고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A2 클래스 수익증권은 적립식투자자의 적립된 목돈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제공, 이자생활자의 정기적인 월지급효과 제공, 월지급식 투자자

자자의 적립식 투자방식 병행 등을 통하여 수익자의 다양한 니즈(Needs)을 충족시키고 투자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다음 각목에 따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의 적립식 투자방식 병행 등을 통하여 수익자의 다양한 니즈(Needs)을 충족시키고 투자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다음 각목에 따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가. 분배금 기준일 및 주기 :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은 2009년 4월 15일로 하며 이후 매 1개월간으로 한다.	가. 분배금 기준일 및 주기 :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은 2009년 4월 15일로 하며 이후 매 1개월간으로 한다.
나. 분배금 지급일 : 분배금 기준일의 익영업일	나. 분배금 지급일 : 분배금 기준일의 익영업일
다. 분배금 : 수익자별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납입금액(제26조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다만, 이 조의 분배금 및 제34-1조제1항의 수익증권의 재투자를 위한 납입금액은 가감하지 아니한다. 이하 “투자원금”이라 한다)의 0.7%. 다만, 마목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분배금 : 수익자별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납입금액(제26조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다만, 이 조의 분배금 및 제34-1조제1항의 수익증권의 재투자를 위한 납입금액은 가감하지 아니한다. 이하 “투자원금”이라 한다)의 0.7%. 다만, 마목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증권좌수 차감 : 분배금의 지급은 ‘평가금액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평가금액분할식’이란 매월 분배금 지급일 현재(이하 본 항에서 “매월”이라 한다)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한다)를 평가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은 다음과 같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 =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	라.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증권좌수 차감 : 분배금의 지급은 ‘평가금액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평가금액분할식’이란 매월 분배금 지급일 현재(이하 본 항에서 “매월”이라 한다)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한다)를 평가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은 다음과 같다.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수익자의 수익증권좌수 차감분 =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
마. 분배금 지급방식 : 제26조 제2항의 본문 및 제2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목의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매월 당해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한다)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매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	마. 분배금 지급방식 : 제26조 제2항의 본문 및 제2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목의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매월 당해 분배직전 수익증권잔고좌수에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익증권좌수(좌미만 절상한다)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매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이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금÷매월 당해 수익자의 분배직전 수익증권평가금액]”

을 “1”로 본다. 바. 분배금 지급 중단 : 마목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④(생략)	을 “1”로 본다. 바. 분배금 지급 중단 : 마목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배금이 최종 분배금이 되며, 다음 분배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④(생략)
제39조(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립식 클래스(C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연금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임의식 클래스(A1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A-H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A-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6. C-D 클래스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립식 클래스(C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임의식 클래스(A1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A-H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A-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6. C-D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7. C-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7. C-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1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2.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③~④(생략)	**제41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③~④(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④(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④(생략)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	2010.4.23기준	2011.9.30기준

<table>
<tr><td>기구의 연혁</td><td colspan="4"></td><td colspan="4"></td></tr>
<tr><td>5.투자운용인력</td><td colspan="4">2010.4.23기준</td><td colspan="4">2011.9.30기준</td></tr>
<tr><td rowspan="8">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종류형 구조</td><td>종류별</td><td>가입자격</td><td>수수료</td><td></td><td>종류별</td><td>가입자격</td><td>수수료</td><td></td></tr>
<tr><td></td><td></td><td>판매</td><td>환매</td><td></td><td></td><td>판매</td><td>환매</td></tr>
<tr><td>A1 클래스</td><td>임의식 투자자</td><td>선취 0.8% 이내</td><td rowspan="4">없음</td><td>A1 클래스</td><td>임의식 투자자</td><td>선취 0.8% 이내</td><td rowspan="4">없음</td></tr>
<tr><td>A2 클래스</td><td>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연금지급식 투자자</td><td>선취 0.8% 이내</td><td>A2 클래스</td><td>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월지급식 투자자</td><td>선취 0.8% 이내</td></tr>
<tr><td>A-H 클래스</td><td>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td><td>선취 1.0% 이내</td><td>A-H 클래스</td><td>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td><td>선취 1.0% 이내</td></tr>
<tr><td>A-E 클래스</td><td>판매회사의 온라인펀드계좌개설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td><td>선취 0.3% 이내</td><td rowspan="4">-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td>A-E 클래스</td><td>판매회사의 온라인펀드계좌개설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td><td>선취 0.3% 이내</td><td rowspan="4">-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tr>
<tr><td>C 클래스</td><td>적립식 투자자</td><td>없음</td><td>C 클래스</td><td>적립식 투자자</td><td>없음</td></tr>
<tr><td>C-D 클래스</td><td>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td><td>없음</td><td>C-D 클래스</td><td>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td><td>없음</td></tr>
<tr><td>C-W 클래스</td><td>Wrap ·집합투자기구(신탁업자)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집합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td><td>없음</td><td>C-W 클래스</td><td>Wrap ·집합투자기구(신탁업자)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집합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td><td>없음</td></tr>
<tr><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td><td>해지위험</td><td>투자신탁 해지위험</td><td colspan="2">투자신탁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td><td>해지위험</td><td>투자신탁 해지위험</td><td colspan="2">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td></tr>
</table>

<table>
<tr><td>투자위험</td><td><table><tr><td></td><td></td><td>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table></td><td><table><tr><td></td><td></td><td>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table></td></tr>
<tr><td>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td><td>2등급</td><td>1등급</td></tr>
<tr><td>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td><td>2. 연금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연금지급식 투자자</td><td>2.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의 투자자로서 매월 분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월지급식 투자자</td></tr>
<tr><td>나. 환매
(5) 환매수수료</td><td><table><tr><td colspan="2">구분</td><td>지급비율(연간,%)</td><td>비고(지급시기)</td></tr><tr><td colspan="2">종류</td><td>C, C-D, C-W 클래스</td><td></td></tr><tr><td rowspan="2">환매수수료</td><td>30일 미만</td><td>이익금의 70%</td><td>환매시</td></tr><tr><td>90일 미만</td><td>이익금의 30%</td><td>환매시</td></tr></table></td><td><table><tr><td colspan="2">구분</td><td>지급비율(연간,%)</td><td>비고(지급시기)</td></tr><tr><td colspan="2">종류</td><td>C, C-D, C-W 클래스</td><td></td></tr><tr><td rowspan="2">환매수수료</td><td>30일 미만</td><td>이익금의 70%</td><td>환매시</td></tr><tr><td>30일 이상 90일 미만</td><td>이익금의 30%</td><td>환매시</td></tr></table></td></tr>
<tr><td>라. 분배</td><td>역모기지론의 개념에 입각한 연금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계약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원금의 감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td><td>역모기지론의 개념에 입각한 월지급식 클래스 수익증권(A2 클래스 수익증권)의 경우 신탁계약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어 투자원금의 감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td></tr>
</tabl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외화표시상장채권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은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외화표시증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		

	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국내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부동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취득가격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실물자산	해당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A1 클래스	A2 클래스	A-H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D 클래스	C-W 클래스
환매수수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구분	수수료율						
	A1 클래스	A2 클래스	A-H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D 클래스	C-W 클래스
환매수수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table>
<tr><td></td><td>
<table>
<tr><td>료</td><td></td><td></td></tr>
</table>
※ 선취판매수수료의 면제
신탁계약서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하여 매수된 연금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td><td>
<table>
<tr><td>료</td><td></td><td>익금의 30%</td></tr>
</table>
※ 선취판매수수료의 면제
신탁계약서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하여 매수된 월지급식 클래스(A2 클래스) 수익증권
</td></tr>
<tr><td>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지급비율(연간, %)</td></tr>
<tr><td></td><td>클래스A</td><td>클래스B</td><td>클래스C</td></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 colspan="3">연 0.74%</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연 1.50%~ 0.71%</td><td>연 0.71%</td><td>연 0.71%</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 colspan="3">연 0.034%</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3">연 0.016%</td></tr>
<tr><td>기</td><td colspan="3">연 0.015%</td></tr>
</table>
</td><td>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지급비율(연간, %)</td></tr>
<tr><td></td><td>클래스A</td><td>클래스B</td><td>클래스C</td></tr>
<tr><td>집합투자업자보수</td><td colspan="3">연 0.74%</td></tr>
<tr><td>판매회사보수</td><td>연 1.50%~ 0.71%</td><td>연 0.71%</td><td>연 0.71%</td></tr>
<tr><td>신탁업자보수</td><td colspan="3">연 0.034%</td></tr>
<tr><td>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td><td colspan="3">연 0.016%</td></tr>
<tr><td>기</td><td colspan="3">연 0.012%</td></tr>
</table>
</td></tr>
</table>

타비용			
총보수·비용	연 2.305%~ 1.515%	연 1.515%	연 1.515%
증권거래비용	연 0.71%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03.05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0.03.05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클래스A	연 2.305%	클래스B	연 1.515%	클래스C	연 1.515%
클래스A3	연 2.055%				
클래스A5	연 1.805%				
클래	연 1.515%				

타비용			
총보수·비용	연 2.302%~ 1.512%	연 1.512%	연 1.512%
증권거래비용	연 1.086%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09.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1.09.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클래스A	연 2.302%	클래스B	연 1.512%	클래스C	연 1.512%
클래스A3	연 2.052%				
클래스A5	연 1.802%				
클래	연 1.512%				

	스 A7	스 A7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010.8.26기준	2011.9.30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0.8.26기준	2011.9.30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0.8.26기준	2011.9.30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0.8.26기준	2011.9.30기준
다.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	2010.8.26기준	2011.9.30기준

무내용		
라.운용자산 규모	2010.8.26기준	2011.9.30기준